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병무청 소속기관인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입영대상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(8급 10명)을 증원하면서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인력 3명(9급 3명)을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병무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19. ~ 4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1,634”를 “1,64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34”를 “1,64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623”을 “1,63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27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,634</u>	<u>1,641</u>	+7
일반직 계	<u>1,634</u>	<u>1,641</u>	+7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623</u>	<u>1,630</u>	+7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85